

『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안에 대한 의견제시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산동면 임천리·봉산리, 장천면 하장리 일원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구·경북경제자유구역(구미디지털산업지구) 및 연접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과 적법훼손지인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일원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,
-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함.

3. 주요 내용

- 대구·경북경제자유구역 일원
 - 위 치 : 구미시 산동면 임천리, 봉산리 및 장천면 하장리 일원
 - 면 적 : 보전관리지역(715,960㎡), 생산관리지역(31,188㎡)
→ 계획관리지역(747,148㎡)
- 적법 훼손지
 - 위 치 :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일원
 - 면 적 : 보전관리지역(9,553㎡) → 계획관리지역

4. 관련근거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 제28조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」 제22조

5. 검토의견

-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, 용도지역 변경 지정시는,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.
- 산동면 임천리 경제자유구역 일원의 용도지역은 2009. 2. 9일 농림지역, 생산관리지역,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결정고시 되었으며,
- 경제자유구역 결정고시는 2008. 5. 6일 6.24km²에서 2011. 6.30일 구역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일부조정하여 4.7km²로 변경고시 하였음.
- 위와같이 관리지역 세분화로 용도지역상 입지가 불가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,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(1-7-2) 규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구역내의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그 외 구역밖의 산지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.
- 옥성면 덕촌리 38-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안은 현재 공장용지로서 1999. 8월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라 보전산지전용 협의를 거쳐 산지전용 부담금 및 산지복구비등을 적법하게 납부하고, 2002. 4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적법훼손지로서 금회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의견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